##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2

발의연월일: 2024. 6. 24.

발 의 자:김승수・임이자・우재준

성일종 • 박충권 • 김장겸

주호영 · 신성범 · 박덕흠

서지영 · 조승환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을 지체없이 해당 대중문 화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 배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위계로 인한 불공정 계약 관행, 계약의 미이행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 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고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4조 및 제41조).

#### 법률 제 호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내역을"을 "내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로, "공개하여야"를 "제공하여야 하며, 요구가 없 는 경우에도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3호 중 "회계장부를"을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 및 지급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제6조(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
	항의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
	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관련된 사항
	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
	료의 제출 또는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회계처리) ① (생 략)	제14조(회계처리) ① (현행과 같
	승)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	2
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	
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	
과 관련된 회계 <u>내역을</u> 지체	<u>내역 및 제3항에</u>
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1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u>회</u>계장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 6. (생략)

- ③ (생 략)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부과·징수한다.

<u>관한 사항을</u>
제공하여야
하며,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소
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를 제공
<u>하여야</u>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2
1. • 2. (현행과 같음)
3 <u></u> 회
계장부 등 회계 내역 및 지급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4.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u>정에</u>